

##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분석과 셀라스-브랜덤 의미론

이 병 덕

**【요약문】** 필자는 2008년 논문에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분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세화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세 가지 비판을 제기하였다. 첫째, 필자는 개념구성적 추론만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으로 본다는 점에서 셀라스와 브랜덤의 견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둘째, 셀라스와 브랜덤은 반사실적 조건문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조건문 일반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해 필자는 이를 직설법적 조건문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셋째, 필자의 분석은 셀라스-브랜덤 추론주의와 양립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인 수준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김세화 교수의 비판들이 셀라스와 브랜덤의 견해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비판들임을 주장한다. 첫째, 개념구성적 추론들만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들로 간주하는 것은 셀라스의 견해이다. 둘째, 셀라스와 브랜덤은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해 구체적인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조건언의 표현적 역할이다. 필자가 셀라스와 브랜덤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이와 같은 조건언의 표현적 역할이고, 이것의 함축을 직설법적 조건문의 분석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것은 필자 자신의 제안이다. 셋째, 조건문들 사이의 기능상의 차이는 추론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이면 ...이다’라는 조건언의 의미와 역할에 관해서 필자가 제시한 이상의 설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주요어】** 직설법적 조건문, 반사실적 조건문, 셀라스-브랜덤 추론주의, 실질적 추론, 김세화

## 1. 들어가는 말

필자는 2008년에 출판된 논문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설명”에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분석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김세화 교수는 최근 논문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분석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을 제시하였다.

- (i) 필자는 분석적으로 타당한 추론만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으로 본다는 점에서 셀라스와 브랜덤의 견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 (ii) 셀라스와 브랜덤은 반사실적 조건문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조건문 일반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해 필자는 이를 직설법적 조건문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 (iii) 필자의 분석은 셀라스-브랜덤 추론주의와 양립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인 수준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필자는 앞서 언급한 논문에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분석을 제시하고, 그다음 이 분석이 기존의 분석들이 갖고 있는 많은 난점들을 피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안임을 보이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였다. 이로 인해 셀라스와 브랜덤 각각의 견해와 필자의 견해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의하지 않았다. 필자의 견해에 대한 김세화 교수의 비판과 오해는 이처럼 필자가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던 점에 일정 부분 기인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김세화 교수의 비판들이 어떤 이유에서 부적절한 비판인지를 밝힘과 동시에 2008년 논문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점들에 대해 부연설명을 함으로써 필

자의 제안을 좀 더 명확히 하는데 있다.

## 2.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과 개념구성적 추론

김세화 교수는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필자의 분석이 셀라스-브랜덤 추론주의로부터 정말로 도출되는지 의심하면서, 그 첫 번째 이유로서 필자가 분석적으로 타당한 추론만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으로 본다는 점에서 셀라스-브랜덤 추론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셀라스-브랜덤의 이론에 대해서 필자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좋은 혹은 타당한 추론은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 한 가지밖에 없다. 물론 셀라스-브랜덤이 형식적으로 타당한 추론과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을 구분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개념적인 구분으로서 실제로는 타당한 실질적 추론에 형식적으로 타당한 추론이 속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옳바르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이해가 추론의 형식적 올바름은 추론의 실질적 올바름에서 기인하고 그것을 통해 설명되어야 하며, 추론의 형식적인 타당함은 추론의 실질적 타당함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는 3절에서 본 브랜덤의 주장과 일치하는 이해이다. 같은 맥락에서 브랜덤은 또한 “형식적으로 타당한 추론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옳바른 추론의 개념에 의해 자연스럽게 정의될 수 있으며 그 역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셀라스 역시 추론의 실질적인 규칙(material rule)이 추론의 형식적인 규칙에도 본질적이라고 하고 있어 필자의 이러한 이해를 더욱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병덕 교수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은 마치 분석적으로 타당한 추론(analytically valid inference)에 국한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는 셀라스-브랜덤의 주장과 거리가 있는 설명이다.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 개념은 이병덕 교수의 설명과 달리 분석적으로 타당한 추론 개념을 넘어서는 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김세화 2012, pp. 258-259.)

우선,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이 분석적으로 타당한 추론에 국한

된다는 주장은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다. 분석적 추론은 정의상 단지 의미(또는 개념)에 의해서 타당한 추론이다. 그런데 추론주의는 추론관계를 통해서 의미(또는 개념)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론이다. 그리고 추론주의에 의하면 비논리적 용어들의 의미(또는 개념)는 이 용어와 관련된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들에 의해 구성된다. 따라서 의미(또는 개념)를 구성하는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들과 독립하여 선행적으로 성립하는 의미(또는 개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가 2005년 논문 “추론주의는 포도와 르포오의 비판들을 피할 수 있는가?(p. 49)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추론주의자는 분석적 추론 개념에 호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의미구성적 추론을 의미의 개념을 선제(presuppose)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김세화 교수의 첫 번째 비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은 ‘의미구성적 추론’보다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의미구성적 추론들만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들로 보는 필자의 견해는 셀라스-브랜덤 추론주의와 어긋난다.

그러나 위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실질적 추론의 범위에 대해 셀라스와 브랜덤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셀라스는 모든 적절한 추론관계들이 의미(또는 개념)를 구성한다고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의미를 구성하는 추론관계인 의미구성적(meaning-constitutive) 추론과 그렇지 않은 추론을 구분한다. 달리 말하면, 그는 언어적 의미와 개념적 내용을 동전의 양면으로 보기 때문에 개념구성적(concept-constitutive) 추론과 그렇지 않은 추론을 구분한다.<sup>1)</sup> 예컨대, 다음 추론은 ‘개’와 ‘동물’의 개념(또는 의미)을 부분적으로 구성하는 실질적으로 타당한

1) 의미구성적 추론과 그렇지 않은 추론 사이의 구분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필자의 2005년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추론이다.

(1)  $x$ 는 개이다. 따라서  $x$ 는 동물이다.

‘모든 개는 동물이다’가 단지 포함된 비논리적 개념들에 의해 참인, 즉 개념적 진리인 이유는 (1)이 ‘개’와 ‘동물’의 개념을 부분적으로 구성하는, 개념구성적 추론이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추론을 고려해 보자.

(2) 이것은 건조한 상태에 있는 잘 만들어진 성냥이다. 따라서 이 성냥을 마찰시키면 불이 붙을 것이다.

만약 위 성냥이 마찰시켜도 불이 붙지 않을 정도로 너무 낮은 온도에 있다면, (2)의 전제가 참임에도 이것의 결론이 거짓일 수 있다. 그런데 개념적 진리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해야 한다. 예컨대, ‘모든 개는 동물이다’는 개념적으로 참이기 때문에 동물이 아닌 개가 존재하는 가능세계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하는 진리는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인 진리이다. 따라서 개념적 진리는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 진리이다. 그러므로 (2)는 단지 포함된 개념들에 의해서 타당한 추론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2)는 개념구성적 추론이 아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 셀라스는 반사실적 추론(counterfactual reasoning)을 옹호하는 추론관계만을 개념구성적 추론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개념구성적 추론과 그렇지 않은 추론은 ‘반사실적 강건성’(counterfactual robustness)에 의해 구분된다. 예컨대, (1)이 개념구성적 추론인 이유는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동물이 아닌 것은 결코 개로 분류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2)가 개념구성적 추론이 아닌 이유는 (2)의 전제가 참이면서 이것의 결론이 거짓인 세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셀라스

에 따르면 (2)는 포함된 비논리적 용어들의 개념을 구성하는,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이 아니다(cf. Sellars 1963b, 특히 pp. 330-331; 그리고 Sellars 1980). 그러나 셀라스와 달리 브랜덤은 개념구성적 추론과 그렇지 않은 추론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거부한다. 따라서 브랜덤은 (2)도 실질적으로 좋은 추론으로 간주한다(cf. Brandom 1994, p. 484; pp. 633-636).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부연 설명을 제시할 것이다.

필자는 앞서 언급했던 2005년 논문에서 위 문제와 관련하여 브랜덤 대신에 셀라스의 견해를 따른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

셀라스의 제안에 따라, 필자는 (비논리적 용어들에 관한) 의미구성적 추론들은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들이며, 또한 앞서 셀라스가 언급한 세 가지 종류의 언어규칙들 즉 언어-진입 규칙들, 언어-언어 규칙들, 그리고 언어-이탈 규칙들이 바로 그러한 추론들이며, 더 나아가 그러한 추론들은 그들의 반사실적 강건성(counterfactual robustness)에 의해 구별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병덕 2005, p. 54.)

‘반사실적 강건성’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과 그렇지 않은 추론을 구분하는 셀라스의 제안에 대해 브랜덤(1994, p. 484)은 “어떤 것도 그러한 전략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긴 하지만, 그 자신은 그러한 전략을 취하지 않는다. (이병덕 2005, p. 59.)

필자가 왜 위와 같은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위 논문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이번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아무튼 중요한 점은 필자가 (2)와 같은 추론들, 즉 단지 포함된 개념들에 의해 타당성을 결정할 수 없는 추론들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은 브랜덤 대신에 셀라스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지, 이들의 견해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셀라스와 브랜덤이 제시하는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들의 예들을 좀 더 살펴보자.

- (3) 피츠버그는 프린스턴의 서쪽에 있다. 따라서 프린스턴은 피츠버그의 동쪽에 있다.
- (4) 지금 번개가 보인다. 따라서 곧 천둥소리가 들릴 것이다.
- (5) 거리에 비가 오고 있다. 따라서 거리가 젖을 것이다.

김세화 교수는 위 예들 중에서 첫 번째 예인 (3)만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석적으로 타당한 추론의 예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예인 (4)와 (5)는 분석적으로 타당한 추론의 예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의 두 번째 예와 세 번째 예는 사실 형식적으로 타당한 추론의 예도 아니며 분석적으로 타당한 추론의 예도 아니다. 오히려 이 예들은 귀납 논증에 의해 정당화되는 추론의 예라고 볼 수 있다. ... 만약 이것이 귀납적으로 정당화되는 추론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에메랄드이다”로부터 “이것은 녹색일 것이다”로의 추론 및 위에 나온 두 번째, 세 번째 추론의 예가 이병덕 교수가 제시한 세 가지 정당한 추론 형식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추론들은 형식적으로 타당한 추론도, 분석적으로 타당한 추론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는 추론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셀라스-브랜덤에 대한 보다 올바른 해석이다. (김세화 2012, pp. 260-261.)

우선, (3)과 마찬가지로 (4)와 (5)도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들이다. 다시 말하면, (4)와 (5)는 번개, 천둥소리, 비, 젖음과 같은 개념들을 부분적으로 구성하는 개념구성적 추론들이며, 따라서 일종의 연역추론들이다.<sup>2)</sup> 이 점을 좀 더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

2) 왜 셀라스가 (4)와 (5)와 같은 추론들을 일종의 연역추론으로 간주하는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필자의 2005년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같은 귀납추론을 고려해 보자.

(4') 지금까지 번개가 보이면 곧이어 항상 천둥소리가 들렸다. 따라서 (아마도) 번개가 보이면 항상 곧이어 천둥소리가 들린다.

인류는 아주 오래 전부터 ‘방금 번개가 보였다’와 ‘곧이어 천둥소리가 들릴 것이다’ 사이의 항상적 연언관계를 관찰해왔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양자 사이에 모종의 법칙적 관계가 있을 것이란 추측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번개가 보이면 항상 곧이어 천둥소리가 들린다’와 같은 개연성 진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4')은 정당한 귀납추론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번개가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전기의 방전현상이고, 빛의 속도가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먼저 번개가 보이고, 곧이어 천둥소리가 들리는 것임을 안다. 따라서 천둥소리는 번개가 보인 후 곧이어 들리는 굉음으로 범주화된다. 이와 같은 개념적 범주화에 의해 (4)는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이다. 같은 이유에서 번개와 관련 없는 굉음은 천둥소리와 아무리 비슷하더라도 결코 천둥소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4)의 추론관계는 단지 개연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법칙적인 것으로 입증된 것이다. ‘아마도 번개가 치면 항상 곧이어 천둥소리가 들린다’와 같은 개연성 진술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4)의 추론관계는 (4')과 같은 귀납적 추론 관계가 아니다.

필자가 2005년 논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셀라스는 (4)와 같은 실질적 추론이 사물들의 법칙성(the lawfulness of things)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4)를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번개가 보인다’와 ‘곧 천둥소리가 들릴 것이다’ 사이에 법칙적 관계가 성립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5)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5)가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인 이유는 거리에 비가 내릴 때 거리가 젖는 것이 법칙적 관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비는 물방울로 구성 되어 있고, 따라서 비가 거리 위로 떨어지면 거리는 물방울에 의해 젖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거리에 비가 오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우리는 단지 ‘아마도 거리가 젖을 것이다’와 같은 개연성 결론이 아니라 ‘거리가 젖을 것이다’라는 단정적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sup>3)</sup> 셀라스에 의하면 이와 같은 법칙적 추론은 ‘비’,

---

3) 한 익명의 심사자는 거리에 비가 오고 있지만 거리에 비닐 덮개와 같이 것이 씌워져 있어서 거리가 젖지 않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5)와 같은 추론은 연역추론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본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셀라스에 따르면 언어적 표현의 의미는 세 가지 종류의 언어 규칙들, 즉 언어-진입 규칙들, 언어-언어 규칙들 그리고 언어-이탈 규칙들에 의해 구성된다. 그리고 ‘지금 거리에 비가 오고 있다’로부터 ‘거리가 젖을 것이다’로의 추론은 언어-언어 규칙에 해당한다. 셀라스에 따르면, (5)와 같은 추론은 사물들의 법칙성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반영하는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이다. 따라서 정당화를 요구하고 이에 응답하는 우리의 사회적 실천 속에서 ‘거리에 비가 오고 있다’라는 전제가 주어지면 이로부터 ‘거리가 젖을 것이다’를 추론하는 것이 경험적 조사 없이 항상 허용된다. 그렇다면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거리에 비닐 덮개와 같이 것이 씌워져 있어서 비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젖지 않는 경우는 ‘거리에 비가 오고 있다’라는 전제와 ‘거리가 젖을 것이다’라는 결론 사이에 법칙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경우인가? 그렇지 않다. 거리에 비닐 덮개와 같이 것이 씌워져 있어서 비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젖지 않는 경우는 엄밀하게 말해서 거리가 아니라 비닐 덮개에 비가 내리는 경우이다. (5)와 같은 추론이 가정하고 있는 것은 전제와 결론 사이에 법칙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칙적 관계가 성립하는 한, 전제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가정하에서 ‘지금 거리에 비가 오고 있다’라는 전제가 주어지면 이로부터 우리는 경험적 조사 없이 ‘거리가 젖을 것이다’를 추론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추론은 형식적으로 타당한 추론이 아니다. 따라서 전통적 논리의 관점에서 보면 연역추론의 예가 아니다. 그러나 셀라스는 (5)와 같은 추론을 언어-언어 규칙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에 포함된 개념의 내용에 의해 타당한, 즉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으로 본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

‘젓음’과 같은 개념들을 구성하는 개념구성적 추론이며, 또한 이와 같은 추론은 연역추론의 일종이다. 요컨대, 셸라스에 의하면 연역 추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한 가지는 형식적으로 타당한 추론 들이고, 다른 한 가지는 (4), (5)와 같이 비논리적 개념들을 부분적으로 구성하는,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들이다.

브랜덤도 비슷한 이유에서 (4)와 (5)를 연역추론의 일종으로 본다. 그에 의하면, 이것들은 커미트먼트-보존적 추론(commitment-preserving inference)이다.

커미트먼트-보존적 추론들은 ... 논리의 형식주의적 전통에서 연역추론으로 나타나는 것을 일반화하는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들 (즉 추론의 옳음과 옳지 않음이 본질적으로 그 추론의 전제 또는 결론에 나타나는 비논리적 개념들의 내용에 의존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표현해주는 추론들)이다. (Brandom 2000, pp. 43-44.)

연역적, 논리적으로 타당한 추론들은 이 종류의 관계[커미트먼트-보존적 추론관계]를 사용한다. 다음 형태의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A는 B의 서쪽에 있다. 따라서 B는 A의 동쪽에 있다; 이 단색 조각은 초록색이다. 따라서 이것은 빨간색이 아니다; 지금 천둥소리가 났다. 따라서 번개가 조금 전에 쳤다. 이러한 추론들의 전제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때문에 결론들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Brandom 1994, p. 168.)

따라서 (4), (5)와 같은 추론들을 일종의 연역추론들로 본다는 점과 관련하여 필자, 셸라스, 브랜덤 사이에 아무런 견해 차이가 없다. 이런 이유에서 (4)와 (5)를 연역추론이 아닌 것으로 보는 김세화 교수의 해석은 옳지 않다.

그런데 브랜덤에 의하면 커미트먼트-보존적 추론들 이외에도 권리-보존적 추론들(entitlement-preserving inference)이 있다. 이 추론

---

이를 위해서는 필자의 2005년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들은 전통적으로 귀납추론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앞서 언급했던 (2)와 같은 종류의 것이다.

(2) 이것은 건조한 상태에 있는 잘 만들어진 성냥이다. 따라서 이 성냥을 마찰시키면 불이 붙을 것이다.

(2)의 전제가 성립하고 또한 반대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우리가 이것의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그렇다고 위 전제가 성립한다고 해서 반드시 위 결론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위 성냥이 마찰시켜도 불이 붙지 않을 정도로 너무 낮은 온도에 있다면, 위 전제의 참과 위 결론의 거짓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 그런데 셀라스와 달리 브랜덤은 (2)와 같은 권리-보존적 추론도 실질적으로 좋은 추론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는 실질적으로 좋은 추론의 범위를 셀라스나 필자보다 넓게 본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렇게 넓게 보는 이유는 개념구성적 추론과 그렇지 않은 추론을 (반사실적 강건성에 의해)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2)와 같은 권리-보존적 추론도 브랜덤에 의하면 개념을 부분적으로 구성해주는 추론이다. 이런 의미에서 의미(또는 개념)와 관련된 (넓은 의미의) 분석적 추론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 개념은 이병덕 교수의 설명과 달리 분석적으로 타당한 추론 개념을 넘어서는 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라는 김세화 교수의 주장은 브랜덤의 견해와 관련해서도 옳은 주장이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셀라스-브랜덤의 이론에서 “좋은 혹은 타당한 추론은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 한 가지밖에 없다”는 김세화 교수의 주장이다. 우선, 셀라스는 형식적 추론과 실질적 추론을 명확히 구분한다. 형식적 추론은 추론의 타당성이 추론에 포함된 비논리적 개념들의 내용에 의존하지 않는

추론이다. 예컨대, ‘이것은 빨강다. 따라서 이것은 비빨강(non-red)이 아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사람이다’와 같은 추론들이다. 반면에, 실질적 추론은 추론의 타당성이 추론에 포함된 비논리적 개념들의 내용에 의존하는 추론이다. 예컨대, ‘지금 번개가 보인다. 따라서 곧 천둥소리가 들릴 것이다’ 또한 ‘모든 색은 연장(extension)을 가진다’와 같은 추론들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추론규칙들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형식적 추론규칙들과 실질적 추론규칙들. 이 분류는 카르납이 그의 책 ‘언어의 논리적 구문론’에서 구분한 두 가지 유형의 변환규칙(transformation rule)—추론규칙을 위한 카르납의 용어—에 대응한다. (1) 논리 또는 L-규칙: 사실적 술어들이 ... 공허하게 발생하는, 즉 논증의 타당성을 훼손함이 없이 동일한 유형과 정도의 다른 용어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추론을 타당하게 만드는 규칙. (2) 물리적 또는 P-규칙: 사실적 술어들이 공허하지 않게, 본질적으로 발생하는 추론들을 타당하게 만드는 규칙. (Sellars 1963a, pp. 292-93.)

이제 다음 추론을 고려해 보자.

모든 황소는 위험하다. 누렁이는 황소이다. 그러므로 누렁이는 위험하다.

위 추론은 타당한 추론이다. 즉,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다. 그렇다면 위 추론은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인가? 다시 말해서, 포함된 비논리적 용어의 의미에 의해 타당한 추론인가? 그렇지 않다. ‘x는 황소이다’로부터 ‘x는 위험하다’로의 추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위 추론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형식을 갖고 있다.

모든 S는 P이다. a는 S이다. 그러므로 a는 P이다.

셀라스에 따르면, 위와 같은 추론은 포함된 논리적 용어의 의미에 의해 타당한, 즉 형식적으로 타당한 추론이지,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이 아니다. 셀라스는 실질적 추론규칙들이 형식적 추론규칙들 만큼 언어에 본질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김세화 교수의 주장과 달리, 실질적 추론규칙이 형식적 추론규칙에 본질적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cf. Sellars 1963a, p. 293).

물론 브랜덤(1994, p. 114)처럼 “용어를 특별히 논리적 용어로 구분해주는 것은 개념내용을 명료하게 하는 그것의 표현적 역할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논리적 용어들을 ‘형식에 의해 타당한 추론’에 호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논리적 용어들과 구분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추론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추론 I는 형식적으로 타당하다 =df (i) I는 실질적으로 옳은 추론이다. 또한 (ii) I는 전제와 결론에 있는 비논리적 용어들을 임의의 다른 비논리적 용어들로 대체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옳지 않은 추론으로 바뀌지 않는다. (cf. Brandom 2000, p. 55.)

그러나 각 논리적 개념을 다른 논리적 개념들과 구분시켜주는 것은 각 논리적 개념과 관련된 추론규칙들이다. 예컨대, 연언 개념은 다음과 같은 ‘&’-도입 규칙과 ‘&’-제거 규칙들에 의해 구성된다.

A, B	A & B	A & B
-----	-----	-----
A & B	A	B

또한 선언 개념은 다음과 같은 ‘∨’-도입 규칙과 ‘∨’-제거 규칙들에 의해 구성된다.

$A$	$A \vee B; \neg A$	$A \vee B; \neg B$
$A \vee B$	$B$	$A$

따라서 논리적 개념들은 이와 관련된 형식적 추론규칙들에 의해 구성되고, 비논리적 개념들은 이와 관련된 실질적 추론규칙들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는 것은 최소한 가능한 견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쉘라스의 견해에 부합한다. 물론 브랜덤이 주장하는 것처럼 논리적 개념들을 구성하는 위와 같은 추론규칙들을 실질적 추론규칙들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브랜덤 방식의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과 필자의 이해방식이 틀렸다는 것 또는 필자가 쉘라스-브랜덤 의미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 3. 다양한 종류의 추론관계들과 조건언의 표현적 역할

김세화 교수의 두 번째 비판에 따르면, 쉘라스와 브랜덤은 반사실적 조건문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조건문 일반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해 필자는 이를 직설법적 조건문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브랜덤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은 그것이 가지는 규범적 지위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며 각각의 범주는 전통적 논리학에서 말하는 연역, 귀납, 그리고 심지어 반사실적 조건문과 같은 양상 추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쉘라스-브랜덤이 말하는 “조건문”은 직설법적 조건문뿐만 아니라 반사실적 조건문과 같은 가정법적 조건문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 중 [커미트먼트]-보존적 추론관계를 명시화한 조건문과 [권리]-보존적 추론관계를 명시화한 조건문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쉘

라스-브랜덤이 말하고 있는 “조건문”은 한 가지 종류의 조건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된 셀라스-브랜덤의 조건문에 대한 이론과 이병덕 교수의 주장은 그 차이가 매우 커 보인다. 셀라스-브랜덤이 가정법적 조건문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조건문 일반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반해 이병덕 교수는 이를 직설법적 조건문의 분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셀라스-브랜덤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다. (김세화 2012, pp. 264-265.)

물론 이병덕 교수의 진정한 의도는 셀라스-브랜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들이 말하지 않은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 자체는 당연히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이병덕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셀라스-브랜덤의 이론에 비해서 자신의 이론을 어떻게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드는가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김세화 2012, p. 265, 주 29.)

우선, 셀라스와 브랜덤은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해 구체적인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형식에 의해 타당한 추론들 이외에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들이 있으며, 조건문은 이와 같은 추론관계가 성립함을 명시적으로 표현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래시는 개이다. 따라서 래시는 동물이다.’라는 추론은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이고, 따라서 ‘래시가 개이면 래시는 동물이다’라는 조건문은 ‘래시는 개이다’라는 전제와 ‘래시는 동물이다’라는 결론 사이에 암묵적으로 성립하는 추론관계를 명시화하는(making explicit)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직설법적 조건문의 분석과 관련하여 필자가 셀라스와 브랜덤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조건문의 이와 같은 표현적 역할(expressive role)이다. 이 견해의 중요한 함축은, ‘A이면 B이다’라는 직설법적 조건문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조건문이 명시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추론관계인 ‘A. ∴ B.’의 정당성 여부에 의존한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 $A \rightarrow C$ ’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 $A \therefore B$ ’가 정당한 추론인 경우이다. 이와 같은 함축을 직설법적 조건문의 분석과 관련하여 주장하고, 이러한 제안을 조건문의 의미에 관한 기존 해석들의 난점들에 적용하고, 또한 직설법적 조건문과 반사실적 조건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등의 구체적 주장들은 필자 자신의 제안이다. 따라서 비록 셀라스, 브랜덤, 필자의 견해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실 자체는, 김세화 교수도 인정하듯이 필자의 제안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실제로 셀라스의 견해와 브랜덤 견해 사이에도 구체적으로 많은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김세화 교수의 보다 중요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브랜덤은 적어도 세 가지 종류의 추론들을 구분한다. 즉,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들에는 커미트먼트-보존적 추론, 권리-보존적 추론, 그리고 비양립성-함축(*incompatibility-entailment*)이 있다. 전통적 분류방식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첫 번째는 연역추론에 해당하고, 두 번째는 귀납추론에 해당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사실적 추론을 옹호하는 양상추론에 해당한다(cf. Brandom 1994, p. 160; Brandom 2000, p. 194). 두 주장  $p$ 와  $q$ 가 실질적으로 양립하지 않는 경우는,  $p$ 에 대한 커미트먼트가  $q$ 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p$ 가  $q$ 를 비양립성-함축을 하는 경우는  $q$ 와 양립하지 않는 모든 것이  $p$ 와 양립하지 않는 경우이다. 예컨대, ‘래시는 개이다’는 ‘래시는 동물이다’를 비양립성-함축을 한다. 왜냐하면 래시가 동물임과 양립하지 않는 모든 것은 래시가 개임과도 양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종류의 실질적 추론들을 명시화하는 조건문들을 한 가지 조건문으로 분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김세화 교수는 주장한다.

그런데 과연 다른 종류의 추론관계들을 명시화하는 조건문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조건문들이어야 하는가? 먼저, 다음 추론을 살펴 보자.

(6) 래시는 개이다. 따라서 래시는 동물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6)은 ‘개’와 ‘동물’ 개념들을 부분적으로 구성해주는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이다. 따라서 (6)의 전제를 승인하는 경우에 이것의 결론도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이제 이와 같은 추론관계를 명시화하기 위해 조건문을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둘 중에 어떤 조건문을 사용해야 하는가?

(6') 래시가 개이면, 래시는 동물이다. (If Lassie is a dog, Lassie is an animal.)

(6'') 만약 (비록 래시는 개가 아니지만) 래시가 개라면, 래시는 동물일 것이다. (If Lassie were a dog, Lassie would be an animal.)

(6')은 직설법적 조건문(indicative conditional)이고, (6'')은 반사실적 조건문(counterfactual conditional)이다. 2008년 논문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필자는 양자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6')과 달리, (6'')은 ‘래시는 개이다’라는 전건이 실제로는 거짓임을 암묵적으로 표현한다(cf. 이병덕 2008, p. 156). 그런데 이와 같은 차이는 (6)이 타당한 추론이라는 사실과 무관하다. 왜냐하면 추론의 타당성은 전제가 참인 조건하에서 결론이 참인지 여부의 문제이지 전제의 진리값이 실제로 무엇인지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6)의 전제가 참일 개연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6')과 같은 직설법적 조건문을 사용하여, 이 전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6)의 결론도 받아들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가 (6)의 전제가 실제로는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6'')과 같은 반사실적 조건문을 사용하여, (비록 이 전제가 실제로는 거짓이지만) 이 전제를 참이라고 가정한 상황에는 (6)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6'')과 같은 반사실적 조건문을 사용할 때는 래시가 개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에서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동일한 조건을 가정한 다. 그런 조건하에서 전제로부터 결론을 옹호할 수 있는 경우에 우리는 (6'')과 같은 반사실적 조건문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반사실적 조건문이 사물들의 성향적 속성 또는 사물들의 법칙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 (7) 만약 이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진다면, 이것은 깨질 것이다.  
 (If this glass were dropped, it would brake.)  
 (4'') 만약 지금 번개가 보인다면, 곧 천둥소리가 들릴 것이다. (If lightning were seen now, then thunder would be heard soon.)

위 반사실적 조건문들은 전건이 실제로는 참이 아닌 경우임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전건이 성립하는 상황에서는 관련된 성향적 속성 또는 법칙적 관계에 의해서 후건이 항상 성립함을 표현한다.

이제 비양립성-함축을 명시화하는 조건문, 커미트먼트-보존적 추론관계를 명시화하는 조건문, 그리고 권리-보존적 추론관계를 명시화하는 조건문이 과연 서로 다른 조건문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 (6) 래시는 개이다. 따라서 래시는 동물이다.  
 (7)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중 초점 렌즈를 발명했다. 따라서 미국의 초대 우정장관은 이중 초점 렌즈를 발명했다.  
 (2) 이것은 건조한 상태에 있는 잘 만들어진 성냥이다. 따라서 이

성냥을 마찰시키면 불이 붙을 것이다.

위에서 (6)은 비양립성-함축 관계이고, (7)은 커미트먼트-보존적 추론관계이고, (2)는 권리-보존적 추론관계이다. 브랜덤에 의하면, 전제와 결론 사이의 추론강도는 비양립성-함축 관계가 가장 강하고, 그다음은 커미트먼트-보존적 추론관계이고, 가장 약한 것은 권리-보존적 추론관계이다. 따라서 비양립성-함축 관계는 커미트먼트-보존적 추론관계이면서 또한 권리-보존적 추론관계이다. 그리고 커미트먼트-보존적 추론관계는 또한 권리-보존적 추론관계이다(cf. Brandom 2000, p. 195). 이제 위의 추론관계들을 명시화하기 위해 어떤 조건문을 사용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우리는 (6), (7), (2)의 추론관계를 다음과 같이 직설법적 조건문으로 명시화할 수 있다.

- (6') 래시가 개이면, 래시는 동물이다. (If Lassie is a dog, then Lassie is an animal.)
- (7')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중 초점 렌즈를 발명했으면, 미국의 초대 우정장관은 이중 초점 렌즈를 발명했다. (If Benjamin Franklin invented bifocals, then the first postmast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invented bifocals.)
- (2') 이것이 건조한 상태에 있는 잘 만들어진 성냥이면, 이 성냥을 마찰시키면 불이 붙을 것이다. (If this is a dry, well-made match, then this match will light if struck.)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양립성-함축 관계는 또한 권리-보존적 추론관계이고, 커미트먼트-보존적 추론관계도 또한 권리-보존적 추론관계이기 때문에, (6), (7), (2)가 모두 최소한 권리-보존적 추론관계이다. 따라서 (2)의 권리-보존적 추론관계를 (2')에 의해 명시화할 수 있다면, (6)과 (7)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제 (6), (7), (2)의 추론관계를 다음과 같이 반사실적 조건문의 형태로 표현한 경우를

살펴보자.

- (6") 만약 래시가 개라면, 래시는 동물일 것이다. (If Lassie were a dog, then Lassie would be an animal.)
- (7") 만약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중 초점 렌즈를 발명했었다라면, 미국의 초대 우정장관은 이중 초점 렌즈를 발명했었을 것이다. (If Benjamin Franklin had invented bifocals, then the first postmast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would have invented bifocals.)
- (2") 만약 이것이 건조한 상태에 있는 잘 만들어진 성냥이라면, 이 성냥을 마찰시키면 불이 붙을 것이다. (If this were a dry, well-made match, then this match would light if struck.)

이제 위의 반사실적 조건문들은 전건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관련된 성향적 속성 또는 법칙적 관계에 의해서 후건이 또한 성립함을 표현한다고 가정해보자. (6)은 비양립성-함축 관계이다. 따라서 가장 강한 추론관계를 표현하기 때문에 (6")이 성립한다. 다시 말해서, 래시가 개인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래시는 동물이어야만 한다. 현실세계에서 벤저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초대 우정장관이었다. 따라서 이 조건을 가정하는 한에 있어서 (7")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에서는 (7")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2")의 경우도 유사하다.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건조한 상태에 있는 잘 만들어진 성냥은 마찰시킬 경우에 불이 붙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위 성냥이 마찰시켜도 불이 붙지 않을 정도로 너무 낮은 온도에 있다면 (2")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전건을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에서든 후건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한 주장이 화자의 의도라면, (2")은 화자가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2")이 명시화하는 추론관계인 (2)는 권리-보존적 추론관계이지, 커미트먼트-보존적 추론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전제와 결론 사이의 추론관계를 조건문에 의해 명시화하는 것과 양자사이의 추론관계를 정당화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문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6)과 같은 동일한 추론관계도 (6')와 (6'')와 같이 다른 종류의 조건문에 의해 명시화될 수 있고, (6), (2)와 같이 다른 종류의 추론관계도 (6')과 (2')의 경우처럼 같은 종류의 조건문—이 경우, 직설법적 조건문—에 의해 명시화될 수 있다. 따라서 (6), (7), (2)가 서로 구별되는 추론관계라는 사실은 이것들을 반드시 서로 다른 종류의 조건문들에 의해 명시화해야 함을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6), (7), (2)처럼 다른 종류의 추론관계들을 (6), (7'), (2')과 같이 직설법적 조건문으로 명시화할 수 있다는 필자의 주장은 셀라스-브랜덤 추론주의와 충돌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논의를 할 것이다.

#### 4. 필자의 제안은 지나치게 일반적인가?

필자의 견해에 대한 세 번째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조건문 전체는 전건과 후건 사이에 올바른 혹은 정당한 실질적 추론관계가 성립함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크게 보아서는 같은 범주의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실질적 추론관계가 실제로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특정 조건문들은 이들 중 어떤 종류의 정당한 실질적 추론관계가 성립함을 명시화하는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서로 다른 종류의 조건문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브랜덤에 의하면 위에서 본 것처럼 적어도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정당한 실질적 추론관계가 존재하며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적어도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조건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한 가지 조건문으로 뭉뚱그려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 용어건 비논리적 용어건 그것이 하는 역할에 의해 의미가 달라진다는 셀라스-브랜덤의 추론주의 이론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는 역할이 크게 보이서는 비록 동일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역할을 볼 때

서로 구분되는 것이라면 그 의미는 서로 달라져야 하며 따라서 서로 다른 종류의 논리적 용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김세화 2012, p. 267.)

김세화 교수에 따르면, 최소한 세 종류의 실질적 추론들이 있고, 이중 어떤 추론관계를 명시화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조건문이 된다. 그렇지만 앞 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브랜덤에 의하면 비양립성-함축 관계는 커미트먼트-보존적 추론관계이면서 또한 권리-보존적 추론관계이다. 따라서 김세화 교수의 주장이 옳다면, ‘래시가 개이면, 래시는 동물이다’라는 조건문은 동시에 세 가지 의미를 가진 조건문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건문을 그와 같이 다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2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셸라스와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은 개념구성적 추론에 국한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들을 명시화하기 위해 직설법적 조건문들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 조건문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조건문이다. 물론,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이 아닌, 귀납 추론의 경우도 직설법적 조건문에 의해 명시화될 수 있다. 앞 절에서 논의했던 다음 두 추론들을 살펴보자.

- (2) 이것은 건조한 상태에 있는 잘 만들어진 성냥이다. 따라서 이 성냥을 마찰시키면 불이 붙을 것이다.
- (4) 지금 번개가 보인다. 따라서 곧 천둥소리가 들릴 것이다.

우리는 전제와 결론사이에 성립하는 위와 같은 추론관계를 다음과 같은 직설법적 조건문을 사용해서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2') 이것이 건조한 상태에 있는 잘 만들어진 성냥이면, 이 성냥을 마찰시키면 불이 붙을 것이다.

(4) 지금 번개가 보이면, 곧 천둥소리가 들릴 것이다.

비록 (2)와 (4)는 다른 종류의 추론들이지만, ‘—이면 ...이다’라는 조건언이 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같다. 조건언은 전건이 성립한다는 조건하에서 후건도 성립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조건문들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전제와 결론의 추론관계를 조건문에 의해 명시화하는 것과 양자 사이의 추론관계를 정당화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앞 절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6'), (7'), (2')과 같은 다양한 조건문들의 차이는 전건과 후건 사이에 성립하는 추론관계의 차이이지, 조건언의 의미 차이가 아니다. 즉 추론의 종류를 구분함으로써 이런 차이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건언의 의미를 구분함으로써 이런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조건언은 기본적으로 전건과 후건 사이에 성립하는 추론관계를 명시화하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 물론 직설법적 조건문과 반사실적 조건문 사이에 기능상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앞 절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비록 전건이 실제로는 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전건이 참이라고 가정하는 상황에서 후건이 성립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반사실적 조건문을 사용할 수 있다. 반사실적 조건문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전건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관련된 성향적 속성 또는 법칙적 관계에 의해서 후건이 또한 항상 성립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다. 그러나 직설법적 조건문과 반사실적 조건문 사이의 이와 같은 차이는, (2)와 (4)를 둘 다 필요에 따라 직설법적 조건문으로 명시화할 수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다. 다시 말해서, (2')과 (4')을 둘 다 직설법적 조건문의 사례들로 봐서는 안 될 좋은 이유가 없다. 또한 이 두 경우에 ‘—이면 ...이다’라는 조건언의 의미를 다르게 봐야 할 좋은 이유가 없다.

김세화 교수의 마지막 비판은 다음과 같다.

물론 여러 종류의 조건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커다란 역할을 전건과 후건 사이에 올바른 실질적 추론관계가 성립함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밝힌 점은 분명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에 속하는 여러 종류의 조건문에 대한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분석이나 이론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메타 분석만을 제시하는 것은 각론으로는 들어가지 않은 채 매우 일반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일반적인 수준의 얘기를 한 것에 그칠 뿐이면 그 대상 개념에 대한 정확하고도 세밀한 이해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개념에 대한 철학적 분석에서 기대하는 바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분석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도 세밀하며 정교한 분석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이면서도 세밀하며 정교한 분석을 통해 우리가 그 개념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명료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그 분석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M-조건문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철학에서 기대하는 분석에 미치지 못한다. (김세화 2012, pp. 268-269.)

필자는 2008년 논문에서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필자의 제안이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기존 해석들의 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제안임을 주장했다. 김세화 교수도 필자의 분석이 기존 해석들의 많은 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필자의 분석이 기존에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함을 요구한다면 절대적인 장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최원배 교수가 그의 2011년 논문 “논란 없는 원리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서 필자에 대해 제기한 비판을 그 근거로 든다. 그러나 필자가 2012년 논문 “논란 없는 원리와 최원배 교수의 반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필자의 분석은 기존에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함을 요구하는 그런 종류의 분석이 아니다.

끝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직설법적 조건문과 반사실적 조건문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또한 조건문을 사용하고 이해하기 위해 어떤 대단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 전제와 결론 사이의 추론관계를 이해하는 사람은 전제가 성립한다는 조건하에서 결론이 성립한다는 조건적 주장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조건언의 의미와 역할에 관해서 필자가 제시한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물론, 필자가 제안한 분석을 통해 해명할 수 없는 큰 난점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분명 큰 문제일 것이다. 그렇지만 김세화 교수는 그와 같은 난점이 있음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 5. 나오는 말

김세화 교수의 비판들은 부분적으로 셀라스와 브랜덤의 견해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점에 기인한다. 김 교수도 이 점을 인정하면서 논문 말미에 다음과 같은 조심스러운 언급을 한다.

필자가 나름대로 셀라스나 브랜덤의 저서를 읽고 추론주의적 의미론과 조건문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이해하고 파악하고자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필자는 결코 추론주의의 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이병덕 교수의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분석이 셀라스-브랜덤의 추론주의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고 반론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조심스럽다. 그래서 필자는 “의문점”이란 용어를 통해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였다. (김세화 2012, p. 270.)

그렇지만 김세화 교수의 비판들이 제기된 것은 필자가 이전 논문에서 셀라스와 브랜덤 각각의 견해와 필자의 견해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지 않았던 점에 더 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이번 논문이 이전 논문의 미비했던 점을 다소나마 보완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김세화 (2012),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분석에 대하여”, 『논리연구』 15집 2호, pp. 251-271.
- 이병덕 (2005), “추론주의는 포도와 르포오의 비판들을 피할 수 있는가?”, 『철학적 분석』 12호, pp. 47-76.
- 이병덕 (2008),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설명”, 『철학적 분석』 17호, pp. 135-164.
- 이병덕 (2012), “논란 없는 원리와 최원배 교수의 반론”, 『논리연구』 15집 2호, pp. 273-292.
- 최원배 (2011), “논란 없는 원리를 둘러싼 최근 논란”, 『논리연구』 14집 3호, pp. 85-99.
- Brandom, Robert (1994), *Making It Explicit: Reasoning, Representing, and Discursive Prac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 Brandom, Robert (2000), *Articulating Reasons: An Introduction to Inferenti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 Sellars, Wilfrid (1963a) "Particulars" in his *Science, Perception and Reality*. Atascadero, California: Ridgeview Publishing Company, pp. 282-297.
- Sellars, Wilfrid (1963b), "Some Reflections on Language Games" in his *Science, Perception and Reality*. Atascadero, California: Ridgeview Publishing Company, pp. 321-358.
- Sellars, Wilfrid (1980), "Concepts as Involving Laws and Inconceivable without Them", in Jeffrey F. Sicha (ed.), *Pure Pragmatics and Possible Worlds: The Early Essays of Wilfrid Sellars*. Atascadero, California: Ridgeview

Publishing Company, pp. 87-123.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Department of Philosophy, Sungkyunkwan University

bydlee@skku.edu

---

## An Inferentialist Account of Indicative Conditionals and Sellars-Brandom Semantics

Byeongdeok Lee

---

In my article published in 2008, I offered an inferentialist account of indicative conditionals. In her recent paper, Professor Seawha Kim raises three objections. First, I misunderstand Sellars-Brandom in that I take only concept-constitutive inferences as materially valid inferences. Second, Sellars and Brandom talk about the common features of all kinds of conditionals including counterfactual conditionals, but I construe their view as the analysis of the indicative conditionals only. Third, either my analysis is incompatible with Sellars-Brandom inferentialism or my analysis is too general. In this paper I argue that Seawha Kim's objections are all based on insufficient understandings of Sellars's and Brandom's views. First, it is Sellars's view that materially valid inferences are restricted within concept-constitutive inferences. Second, neither Sellars nor Brandom proposes a specific theory about the indicative conditional. Instead, they argue for the expressive role of the conditional. What I accept from their views is this expressive role of the conditional. The detailed proposals about the indicative conditional in my aforementioned article are my own. Third, the differences among conditionals

have no direct bearing on Sellars-Brandom inferentialism. In addition, the meaning and role of the conditional expression 'if-then' do not require more than what I have argued for it.

Key Words: Indicative conditional, Counterfactual conditional, Sellars-Brandom inferentialism, Material inference, Seawha Kim